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0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권 오 규

●법률 제805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채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68조 중 “滯納者·納稅擔保物所有者와 그 재산상에 傳貰權·質權·抵當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채납자
- 2. 납세담보물소유자

-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366호

번

년

2006.10.27. (금요일)

◇국세징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채납시 채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채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0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법률 제8056호

檢事懲戒法 일부개정법률

檢事懲戒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檢事懲戒法”을 “검사징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